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공고 제2026-50호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무자(소유자 또는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공고 제2026-50호[국유재산(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국유재산(진해 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자진철거 명령 계고 공시송달

2.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제82조(벌칙)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16. (15일간)

4. 공고대상

위치	대상물	수량	대집행 방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 196, 산 197, 산 198, 산 199	불법시설물 일체 (장박텐트, 불법건축물, 기타 적치물 등)	불법시설물 일체 (장박텐트, 불법건축물, 기타 적치물 등)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

5.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행정대집행 시행 시 우리 기관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께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제2재산관리과(☎053-750-7146)

제 2026-2 호

행정대집행 고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6월 17일, 제 2026-1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시설물(장박텐트, 불법건축물, 기타 적치물 등)을 2026년 7월 1일까지 철거(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현재 소쿠리섬(국유지) 내 존치하는 일체의 불법시설물은 **2026년 7월 16일까지 반드시 철거(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행정처분 방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 196, 산 197, 산 198, 산 199	불법시설물 일체 (장박텐트, 불법건축물, 기타 적치물 등)	불법시설물 일체 (장박텐트, 불법건축물, 기타 적치물 등)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

2026 년 7 월 2 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 196, 산 197, 산 198, 산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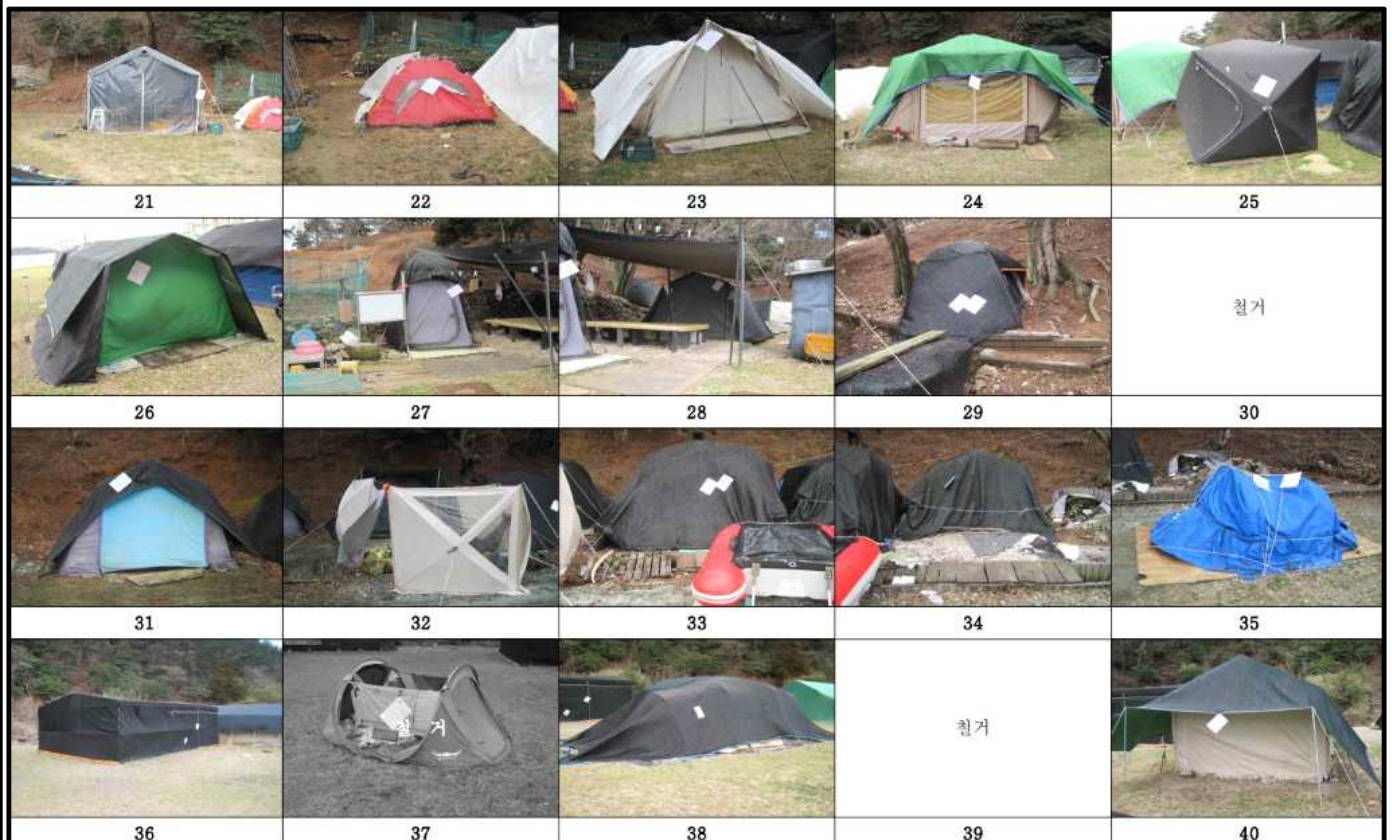
□ 현장전경



□ 불법시설물 (1~20) * 추가/변동될 수 있음



□ 불법시설물 (21~40) * 추가/변동될 수 있음



□ 불법시설물 (41~60) * 추가/변동될 수 있음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철거
56	57	58	59	60

□ 불법시설물 (61~80) * 추가/변동될 수 있음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61	62	63	64	65
				철거
66	67	68	69	70
	철거	철거	철거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불법시설물 (81~85) * 추가/변동될 수 있음



81



82



83



84



85